

제24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2019. 6. 10.~6. 24.

# 조 례 안 상 정

(조례 11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76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2019-77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7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79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9-80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9-8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019-8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19-8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19-84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5
2019-85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019-8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7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어있는 장애등급 표현을 제때에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용어 일괄정비(안 제1조~제6조)

1) 6개 조례

2) 개정유형

가) 장애등급 ⇒ 장애정도

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8.~5.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제3조(「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4조(「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들을)”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등급”을 “장애정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로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제6조(「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7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장,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직급 상향 조정

- 1)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 4~5급 → 4급
- 2) 거창읍장 : 5급 → 4~5급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별표 3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7.~5. 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02	322	14	134	67	67	41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70	318	14	107	40	67	40	40	151
	4급	3 ±	3 ±							
	4~5 급	2 3	0 2		1		1		1 0	
	5급	37 38	15	3	5	4	1	3	0 ±	11
	6급 이하	628	300	11	101	36	65	37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7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9. 6. 5.)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초지법」 등 타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함(안 제6조제6항)

1) 재산관리 담당부서장 ⇒ 재산관리 담당국장

나. 「초지법」에서 위임한 대부료를 신설(안 제24조제7항)

1)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사용료·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안 제30조제5항·제6항제3호)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경

라. 그 밖의 법령 폐지 및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15조의2제1호, 제24조 제6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29조

2) 「초지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4. 26.~5.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을 “(재산관리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제24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고도의 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기술”로 “100만달러”를 “200만달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제7항·제8항을 제8항·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생략) ⑤ <u>민간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u>재산관리 담당부서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⑪ (생략)</p> <p>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외국인토지법 시행령</u>」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p> <p>제24조(대부료율)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실경작자</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6.12.28.) 3.~6.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u>재산관리 담당국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⑪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p> <p>제24조(대부료율)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농업인</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6.12.28.) 3.~6.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u>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p> <p>⑦ 「<u>초지법</u>」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p>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 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사. (생략)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바. (생략)

사.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2016.12.28.)

③ (생략)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바.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⑦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가.~라.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라. (생략)

<신설>

⑦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0을 경감한다.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가.~라.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라. (현행과 같음)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⑧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79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 1. 제안이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에서 면제하는 진료비 및 검사비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진료비 및 검사비의 면제기준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3조·별표)

- 1)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감염병 예방, 국가 등 행사지원, 공무상 요청, 수사상 필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보건의료 취약계층 방문진료
- 2) 진료비 면제 : 65세 이상 거창군 주민, 장기기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5. 8.~5.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조제목·본문, 제5조 조제목·제1항 중 “진료비등”을 “진료비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li> <li>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li> <li>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li> <li>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5.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li> <li>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li> <li>7.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li> <li>8.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li> <li>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li> <li>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li> <li>1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li> <li>12.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li> <li>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li> </ol>	<p>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p>

제4조(진료비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방법) 진료비 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

면제범위	면제대상
진료비 및 검사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li> <li>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3.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 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li> <li>4.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li> <li>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li> <li>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 의료</li> <li>7.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li> <li>8.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li> </ol>
진료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li> <li>2.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 기증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 기증자</li> <li>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li> <li>4.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li> </ol>

비고: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시장기능이 상실된 위천시장을 폐지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천시장을 삭제함(안 별표 1)

나. 용어를 정비함(조례 전반)

1) 대상 : 사용, 사용료 ⇒ 이용, 이용료

2) 이유 : 공설시장 시설 이용은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관계에 따른 이용에 해당함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4. 19.~5.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거창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을 “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로 한다.

제2조 중 “거창군”을 “거창군이 개설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이용신청)** ① 시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조 제목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을 “(이용 취소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을 “시장 시설 이용을 취소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이용 신청을 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사용하는 자”를 “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6조 조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을 “이용”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사용료 반환)”을 “(이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8조제1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위천시장란을 삭제하고, 별표 2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u>거창군 공설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사용허가) ① <u>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u>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제4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u>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u>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u>사용허가를 받은 경우</u> 2. 제5조에 따른 <u>사용자</u>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p> <p>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u>시장을 사용하는 자는</u>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u>하여서는 아니</u> 된다. ② <u>시장을 사용하는 자는</u>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거창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u>거창군이 개설한 공설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이용신청) ① <u>시장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u> 시장 시설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점을 이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제4조(이용 취소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u>시장 시설 이용을 취소하거나</u>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u>이용 신청을 한 경우</u> 2. 제5조에 따른 <u>이용자</u>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p> <p>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u>시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u>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u>해서는 안</u> 된다. ② <u>이용자는</u>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p>

③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 취소를 신고한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사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일액으로, 시장 개장일에 받는다.

**제7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장현대화 사업,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로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이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삭 제>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 2019. 7. 1.)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등록·심사 절차를 신설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를 정함(안 제2조~5조)

-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등 심의
-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나.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운영을 정함(안 제6조)

- 1)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 원칙
- 2)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탄력운영 가능
- 3)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4)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방법 :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에 신청  
다. 조례로 위임된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를 정함(안 제7조)

라.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전 등록·심사 절차를 정함(안 제8조·별표 1)

-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 2)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결과 통보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등

- 마. 이용기간, 이용기간 연장을 정함(안 제9조·제10조)
- 바. 운전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사. 이용요금을 정함(안 제12조·별표 2)
- 아. 운행지역을 정함(안 제13조·별표 3)
- 차. 교통사업자,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함(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의2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5. 9.~5. 2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월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8조(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별표 1 제2호가목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지원 기간
  - 나. 별표 1 제2호나목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한 기간

**제10조(이용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기간 등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별표 2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기준보다 높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른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③ 이 조례 당시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제8조 관련)

구분	제출서류
1.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 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제12조 관련)

구 분	이용요금
1.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가.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이하
	나.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별표 3]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연계·환승 지원 및 운행지역(제13조 관련)

구 분	연계·환승 지원 및 운행 지역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비고

위 표 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귀하(주소: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용대상자와 관계
이용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애 유형	<input type="checkbox"/> 영구장애 ( 장애 )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장애 ( )	
차량 유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input type="checkbox"/> 일반 차량	
이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정 사유				

년 월 일

거창군수 (인)

210밀리미터×297밀리미터

#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위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근거를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4. 19.~5. 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게 일반적 범위에서 필요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지원 결정)</b>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b>군</b>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li> <li>3. (생략)</li> </ol> <p>② (생략)</p> <p><b>제4조(지원기준)</b>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li> <li>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li> <li>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p>	<p><b>제3조(지원 결정)</b>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b>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b>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b>제4조(지원기준)</b>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li> <li>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li> <li>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li> <li>4. <b>피해주민에게 일반적 범위에서 필요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b></li> </ol> <p>⑤.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p>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3.~8.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8. (현행과 같음)

**<삭제>**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 1. 신고인 정보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그 밖의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신고인과 같을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확인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 피해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인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 ]	[ ]		

## 4. 확인사항

같은 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다른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조례로 정했으나 조직개편으로 국장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필요가 없어 그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1) 위원장 부군수 규정 삭제 : 조직개편으로 국장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필요 없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됨

2)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심의위원회 운영부분 삭제하고 심의사항만 규정(안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8.~5.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 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② 삭제 (2017.5.10.)</p> <p>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li> <li>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li> <li>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li> <li>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li> </ol>	<p>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②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p>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p> <p>⑤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p> <p>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li> </ol>	<p>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2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li> </ol>

현 행	개 정 안
<p>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p> <p>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p> <p>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p> <p>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p> <p>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p> <p>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p> <p>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p> <p>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p>



#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9-8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병해충·돌발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해충예찰·방제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1) 병해충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나. 예찰·방제단 임무를 정함(안 제3조)

1)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계획·시행·지도점검, 예산 및 기술 지원, 교육 등

다. 예찰·방제단 구성을 정함(안 제4조)

1) 행정지원반, 예찰·방제반으로 구분하여 반별 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가) 행정지원반 :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나) 예찰·방제반 : 식물방제관, 예찰·방제 분야 담당공무원, 군수가 위촉한 예찰·방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장 :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3) 위촉반원 :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 위촉가능, 임기 3년

라. 예찰·방제단 운영(안 제5조)

1) 연중 운영, 예찰·방제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2)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규모 확산 방지 노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5. 10.~5.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시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의 병해충예찰·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교육
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 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행정지원반과 예찰·방제반으로 구성하되, 각 반별 반원은 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행정지원반원은 공무원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
3.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예찰·방제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예찰·방제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유용미생물 공급일시·신청방법, 무상공급 사유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유용미생물 공급 일시를 현 운영현황과 일치시킴(안 제8조)  
 (현행) 매주 2회 09시부터 15시까지  
 (변경) 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 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사유 현실정에 맞게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 다.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방법 보완함(안 제10조제2항)
- 라. 유용미생물 공급가격 공고시기 변경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9조·제10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4. 12.~5. 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

##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배양센터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 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미생물 공급대장을 적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급가격)** ① 군수는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한다.

제12조·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p> <p>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p> <p>②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p> <p>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p> <p>③~⑤ (생략)</p> <p>제8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0조(공급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li> <li>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li> <li>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p> <p>제5조(운영·관리) ① 배양센터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p> <p>②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급일시)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0조(공급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li> <li>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li> <li>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현 행	개 정 안
<p>②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군수가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p> <p>제12조(판매금액 입금)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미생물 공급대장을 적는 것으로 같음 한다.</p> <p>제11조(공급가격) ① 군수는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별지 제2호서식]

## 미생물 공급대장

20 . . .

연 번	이 름	주 소	연 락 처	신 청 미 생 물	신 청 량 (리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자녀가정, 관내 유치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공급의 공익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7)

-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 20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3) 관내 유치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4)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

가) 「식품위생법」 2017. 5. 19.개정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여 군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4. 26.~5.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별표 7,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7] 상수도요금 감면율(제37조 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용 1단계 요금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나.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라.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마.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정용 수도사용자	50퍼센트	
아. 위생등급지정 우수업소	30퍼센트	
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가정용	60퍼센트
	일반용	4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
차.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로 전환되는 지역에서 지방상수를 공급받는 자	1년차	30퍼센트
	2년차	20퍼센트
	3년차	10퍼센트

## 비고

1. 감면비율은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가목에서 자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3. 가목에서 라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함
4. 가목에서 다목까지는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라목은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차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 정상요금을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신 규  
 상수도요금 {  해 지 } 감면 신청서  
 지하누수

신청인	주소	거창군 읍·면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수도수전현황	주소	거창군 읍·면				
	수용가 번호		업종		구경	
감면대상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관계			감면대상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거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감면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 지하누수: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유의사항: 사용요금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수도사업소에 알려야 한다.